

서안동농협 공고 제 2020 - 07호

## 업무용 부동산 매각 공고

서안동농협의 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1. 매각(입찰) 대상 물건 (단위:천원)

물건 번호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지목	면적(㎡)	매각 최저금액	비고
1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770-1	창고 용지	957.0	122,600	
		771-1	전	75.0		
		770-5	대	35.0		
		위 지상	건물(1)	330.0	20,500	
		위 지상	건물(2)	166.38		
		합 계				

주) 건물의 매각 최저금액은 VAT미포함 금액임.

2. 입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등록·마감 일시	2020.06.03.(수), 접수시간 : 09:00~17:00까지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본점 2층 안전총무과>
입찰(개찰) 일시	2020.06.04.(목), 11:40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31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3층 회의실>

3. 매각(입찰) 방법 : 최저입찰금액 공개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

4. 입찰참가서류

- ① 개인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우리 농협 소정양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서안동농협 조합원증명서
- ② 대리인 참석 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입찰인의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③ 입찰등록서류 지참하여 직접 등록(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④ 입찰등록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접수)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가능.

5. 입찰참가 자격

: 2020.01.01.부터 계속하여 풍산읍 신양1·2·3리에 주소를 둔 서안동농협 조합원

##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

- ①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 응찰이 가능하며, 최저입찰금액이상 응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② 낙찰이 된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시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 ③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상이 할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으로 입찰함.)
- ④ 입찰서의 입찰자란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인은 본인의 성명 기재)
- ⑤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사용인감)으로 한다.(사용인감으로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 신청서 등록 시 자기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당 농협에 귀속된다.
- ③ 입찰보증금의 환불은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또는 유찰 되거나 입찰이 중지된 때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되 입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8. 입찰무효

- ① 입찰 유의서 및 당 농협 계약사무처리 준칙에 의한다.

제59조(입찰의 무효)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예정가격을 공개하였음에도 낙찰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 한 입찰
5.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6. 기타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농협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농협에 귀속됩니다.
- ② 매매대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보증금으로 전액 대체하며
  - 낙찰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대상물건의 매매계약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관계법령에 의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거래 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 체결 시 건물의 양도, 양수에 관한 시기 및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10.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명도일 【대금납부 완료 후】 로 하고 등기비용과 부동산거래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사항

- ①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물건별 등기부열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② 매각물건의 공부 및 실물과의 구조·면적 등이 상이,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는 농협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 관련 공부의 현장답사 및 행정관청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매수자는 매각대상물건에 대하여 현존상태로 인수하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비용청구 및 매매대금 조정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시설물의 정비, 철거는 매수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시설물의 간판 등 당농협을 연상시키는 광고물은 소유권 이전 완료 후 3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④ 매매목적물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잔금납부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직접 입찰을 실시하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⑥ 본 공고사항은 서안동농협 홈페이지(인터넷), 본점 게시공고, 신양1,2,3리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당농협 내부규정 등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안동농협 안전총무팀(☎ 054-855-7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 05. 27.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 매매 입찰 유의서

**제1조(입찰참가자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의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하는 자
2.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본 농협 직원의 구매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

**제2조(관련사항의 숙람)** 입찰하는 목적 물건을 숙람한 후, 이 유의사항, 입찰공고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보며, 이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3조(입찰방법)

- ① 입찰은 1인 이상이 입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입찰서, 입찰봉투 등은 당 농협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은 구매공고의 (물건번호별) 매각 방식으로 합니다.
- ④ 입찰서에 기재할 금액은 총액으로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금액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⑤ 입찰자는 입찰서 및 입찰봉투 작성시 입찰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연명으로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지위·성명 및 법인의 등록번호와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⑥ 입찰서의 영수증(수령증)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기재하는 것이므로 미리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⑦ 입찰자는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입찰봉투에 넣어 소정의 시간 내에 비치된 입찰함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⑧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4조(첨부서류)** ①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②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제5조(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심료·수수료가 소요되는 자기앞수표는 소정의 추심료,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개찰)**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입찰완료 즉시 입찰자의 면전에서 실시합니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2. 입찰서에 기재한 문자 또는 숫자 중 입찰금액, 구매물건의 표시, 입찰자의 기명날인 기타 중요 부분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3. 1장의 입찰서에 수개의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4.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5. 기타 이 유의서에 위반한 사항

**제8조(낙찰자의 결정)** 당해물건 최저입찰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같은 금액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제9조(재입찰)** 입찰금액이 당해 최저입찰가격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즉석에서 당농협의 판단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제10조(입찰보증금 환급 및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또는 유찰 되거나 입찰을 중지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되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제11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당 농협과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 하여야 하며 낙찰 후 5일 이내에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치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농협에 귀속됩니다.

② 매매약정체결 물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118조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아무런 통지 없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제2항의 허가대상물건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은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12조(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 공매물건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제3자의 침해유무 또는 구조, 규격, 수량, 품질 등의 차이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사전조사 확인하여 참가하기로 하며, 이를 이유로 후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3조(비용부담)** 소유권 이전비용과 입찰대상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제3자 물건의 철거 및 동비용 등은 낙찰자의 책임하에 정산하기로 합니다.

**제14조(인도·명도)** 당 농협이 인도 또는 명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공매물건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목록대로 인도 또는 명도합니다. 다만, 인도 또는 명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동 소송이 종료된 후에 행하기로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 농협에서 발주하는(업무용 부동산 매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요구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게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_\_\_\_\_ (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